

# 첨단 무인기 연구센터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---

# 첨단 무인기 연구센터 규정

## (Advanced UAS Research Center)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 1조** (명칭 및 소재지)이 연구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첨단 무인기 연구센터(이하 본 센터라 함)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본 대학교라 함)내에 둔다.

**제 2조** (목적)본 연구센터는 민수 및 군수 분야의 무인기 기술을 연구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** (사업)본 연구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무인기 분야에 대한 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
2. 동 분야의 기술개발
3. 동 분야의 연구자료집, 도서, 연구지 발간
4. 동 분야의 연구발표회
5. 동 분야의 산학협동연구, 위탁연구, 과제연구 등의 수행
6. 타 기관과의 협력, 공동연구 및 기술지도
7. 기타 본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### 제 2 장 조 직

**제 4조** (조직)본 연구센터에는 연구지원실, 연구기획실, 홍보실을 둔다.

**제 5조** (임원 및 임무)본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1인, 부센터장 1인 (연구지원실 실장 겸임) 및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.

- ①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본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 한다.
- ②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통괄한다.
- ③부센터장은 연구지원실 실장을 겸임하며, 센터의 행정업무를 통괄한다.
- ④감사는 회계 연도 말에 본 연구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,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**제 6조** (연구실)본 연구센터에 소정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연구부를 둔다. 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책임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 연구부의 설치와 폐지 및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센터장이 시행한다.

- ①연구센터는 전문분야별로 연구부를 둘 수 있다.
- ②연구부장은 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③연구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운영위원회: 연구센터 운영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센터장, 간사, 연구부장 및 연구실장으로 구성한다.
- ⑤감 사: 연구센터 회계활동을 감사한다.
- ⑥부 장: 각 연구부의 활동을 주관한다.
- ⑦연구지원실: 연구센터 운영관리의 세부사안, 연구센터의 중장기 연구사업 기획 및 홍보/대외 협력 등의 통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. 연구지원실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.

**제 7조** (연구원)본 연구센터에는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조원, 특별연구원을 두고 필요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1. 책임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2.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3. 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박사과정 학생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4. 연구조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석사과정 학생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5. 특별 연구원은 본 연구센터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외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**제 8조** (자문위원)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**제 9조** (운영위원회)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**제10조** (위원회구성)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 센터장 및 연구부장 및 실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연구지원 실장이 담당한다.

**제11조** (심의사항)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- ②연구과제의 선정
- ③연구계획, 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, 평가
- ④본 연구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출의 건
- ⑤기타 본 연구센터 운영상의 중요 사항

**제12조** (회의)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3 장 재 정

**제13조** (재정)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자체수입금, 대학에서 책정한 연구센터 예산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14조** (회계년도)본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5조** (연구비지급 및 관리)연구비 운영 및 관리 규정은 대학의 규정에 따르며,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6조** (규정준용)이 규정에서 준용하지 않은 기차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 4 장 기 타

**제17조** (시행세칙)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13년 1월 25일부터 적용한다.